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21. 12. 16.)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상향 법제화되어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절기간 선물 가액 범위 상향[별표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1.12.16.)으로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10만원→20만원) 상향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중첩되는 규정 및 서식을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 및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7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15, FAX : 02-3396-9015, e-mail : min01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비고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비고 ‘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비고 ‘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	<삭 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나. 구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청 대상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

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삭 제>

<p>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p>제9조(직무 관련 영리 행위등 금지) ① 공무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p>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p>	<p><삭 제></p>

<p>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 또는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p>	<p><삭 제></p>

<p>당한다)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1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청사·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p>	<p>-----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2.)</p>	<p>----- ----- -----.</p>
<p>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p>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삭 제></p>

<p>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p>	<p>-----</p> <p>-----</p> <p>-----</p> <p>-----</p> <p>-----</p>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
 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
 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
 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은 10만원으로 한다.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신 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
 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항수번호	항수일
성명	
신고인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성명	
주소	
직무관련자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저직하였던 법인 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구분	내용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업무	
의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삭 제>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검,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적부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참고 자료	
OO기관 귀중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년 월 일</p>

<삭 제>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
인·조치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검,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적부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p>확인결정일</p> <p>확인결정자 (인)</p>

<삭 제>

[별지 제15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삭 제>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종류번호	연도	직위	직무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사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합격후)(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단위)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합격후)(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합격후)(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대금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영자료 첨부		